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18

발의연월일: 2022. 12. 7.

발 의 자: 안병길 · 구자근 · 권명호

김선교 · 김희곤 · 류성걸

박대수 · 백종헌 · 유의동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최춘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도 양식업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 면허를 통해 얻은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이나 임대차 및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 조합이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 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

법률 제 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협의"를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로,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어촌계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어촌계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계원·준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원·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어촌계·내수면어업계와 지구별수협"을 "어촌계·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을 "어촌계·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② (생 략)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	
법」 제104조에 따른 <u>업종별</u>	<u>업종별</u>
<u>수산업협동조합</u> , 「농어업경영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u>협"이라 한다)</u>
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	
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	
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u>지구별수협</u> 또는 내수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	
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
 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
 하다.
 -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 2. <u>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u>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 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u>어</u> 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2	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1	
1.	
	<u>지구별수협 또는 업종</u>
	<u> 별수협의</u>
	<u>내수면어업계, 지구</u>
	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u>ਰ</u> ੇ
	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
	종별수협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
	종별수협

- ② (생략)
-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생략)
 -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u>지구별수협</u>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u>어촌계원·준</u>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

3 <u>내수면어업계, 지구</u>
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_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u> </u>
 .
③
어촌계원 ·
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
<u> 별수협</u>
비스며시어게 기그버스
<u>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u>

<u>별수협</u>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 저 업권을 취득한 <u>어촌계·내수면</u> <u>어업계와 지구별수협</u>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 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협 또는 업종별수협
④ (현행과 같음)
세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u>어촌계·내수</u>
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
별수협
· ② (현행과 같음)